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연부연납과 사후관리 5년

회계법인 리파인드

가업승계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공제와 특례는 요건이 미달하면 배제되고, 사후관리를 어기면 추징됩니다

검토 결론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상증법 §18의2①).

증여특례는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이며 사후관리는 증여일부터 5년입니다(조특법 §30의6①·③).

성립 조건 4개

1
가업 해당
별표 업종, 규모·독립성, 10년 경영

2
지분 보유
특수관계인 합산 40%(상장 20%), 10년 보유

3
후계자 기한
증여 3개월 내 신고,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4
사후관리
5년간 가업 종사, 대표이사직, 지분 유지

이런 분께

- 가업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 주식을 증여할지 상속으로 남길지 비교 중인 분
- 증여나 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
- 후계자의 대표이사 취임 시기를 정해야 하는 분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현황 진단	업종, 자산총액 또는 평균 매출, 경영기간,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과 10년 보유, 대표이사 재직 이력을 조문과 대조합니다. 가업 해당 요건이 미달하면 두 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부를 먼저 판정합니다.
2 방식 비교	사업무관자산을 뺀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하고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같은 주식으로 비교합니다. 한도, 세액, 상속 때 합산 효과, 연부연납 기간, 후계자 취임 일정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3 신고·신청	증여는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와 특례신청을 함께 합니다. 상속은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연부연납을 쓰면 신청과 담보 일정도 같이 정합니다.
4 사후관리	5년간 지분, 대표이사직, 가업용 자산, 고용(상속의 경우) 변동을 매년 점검합니다. 지분 변동 사유가 생기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먼저 확인하고, 추징 신고기한을 일정표에 기록합니다.



02

가업승계 구조와 세금

같은 주식도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대상 가액은 사업무관자산만큼 줄어듭니다

가업승계는 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중 어느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고, 증여는 10억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두 제도 모두 대상은 주식 전체가 아니라 사업무관자산을 뺀 비율만큼의 가액입니다. 방식을 정하기 전에 가업 해당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비율부터 계산합니다.

도해 1. 가업승계 거래 흐름

가업 판정
업종, 규모, 10년 경영, 지분

→

방식 선택
상속공제 또는 증여특례

→

신고·신청
증여는 3개월 내 특례신청

→

연부연납
신고 때 신청, 증여 15년, 상속 가업분 20년

→

사후관리 5년
종사, 대표이사직, 지분 유지

100억원 증여 산출세액: 특례 9억원, 일반 약 45.15억원

가업자산상당액 100억원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재산공제 사용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특례는 10억원을 공제한 90억원에 10%를 적용해 9억원입니다. 일반 증여는 공제 5천만원을 뺀 99.5억원에 상증법 §26 세율을 적용해 약 45.15억원이며, 상증령 §53⑥·⑦의 중소·중견기업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약 36.15억원입니다. 과세가액이 130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가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의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근거: 조특법 §30의6①, 상증법 §26·§53 2호·§56, 상증령 §53⑧9호

도해 2.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비교

가업 해당 요건은 같고 대표이사 재직, 후계자 기한,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항목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와 방식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상증법 §18의2①)	같은 한도(10억원 공제 전 과세가액 기준) 안에서 10억원 공제 후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조특법 §30의6①)
후계자 기한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등 취임(상증령 §15③2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조특령 §27의6①2호)
사후관리	상속개시일부터 5년. 자산 40% 처분, 미종사(대표이사 등 미종사 포함), 지분 감소, 고용·급여 90% 미달(상증법 §18의2⑤, 상증령 §15⑪1호)	증여일부터 5년. 미종사, 휴·폐업, 지분 감소, 대표이사직 미유지, 주된 업종 변경(조특법 §30의6③, 조특령 §27의6⑥)
납부 지원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담보 제공. 가업상속재산분 세액은 20년 또는 10년 후 10년, 나머지는 10년(상증법 §71, 상증령 §68②)	특례 적용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15년.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담보 제공(상증법 §71①, ②2호가목)
상속 때 정산	해당 없음. 상속개시 시점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간 불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조특법 §30의5⑨·⑩)

증여특례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30의6⑤, §30의5⑩).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상증법 §26 표입니다.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요건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배제되고, 사후관리 위반은 추징됩니다

1 가업 해당 여부

별표 업종이 주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 규모와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 요건(독립성 등)을 갖추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고, 규모는 상속개시일(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봅니다. 하나라도 미달하면 공제와 특례가 모두 배제됩니다.

근거: 상증령 §15①2호·②2호, 상증법 §18의2①, 조특령 §27의6⑭·⑮

2 지분 보유와 재직

부모는 최대주주등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은 영위기간의 50% 이상이 기본입니다. 상속은 승계 후 10년 계속 재직이나 소급 10년 중 5년 이상도 인정하고, 증여는 증여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을 인정합니다. 부모가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해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 요건을 못 채우면, 증여한 주식을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 요건을 봅니다.

근거: 상증령 §15③1호, 조특령 §27의6⑪1호·⑧1호

3 후계자의 기한 요건

증여는 수증자가 18세 이상이고 부모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증자(또는 배우자)는 신고기한(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이 2년 종사 요건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등에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학업을 이유로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지 못했어도 공제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법규재산2014-1325, 2014년 회신).

근거: 조특법 §30의6①, §30의5⑩, 조특령 §27의6⑪2호, 상증령 §15③2호, 법규재산 2014-1325

4 사업무관자산 비율

대상 가액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을 곱해 계산합니다. 임대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토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200%를 넘는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과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입니다. 비율이 30%이면 100억원 주식 중 70억원만 대상이고 증여특례 세액은 6억원입니다. 정기예적금 해지금액을 예적금 갱신이나 차입금 변제에 쓴 법인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이 심판에서 유지됐습니다.

근거: 상증령 §15⑤2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 조특령 §27의6⑩, 조심-2026-부-1671

5 한도와 중견기업 요건

한도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증여특례의 한도는 10억원 공제 전 과세가액에 적용하고, 자녀 여러 명이 증여받으면 한 사람이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중견기업의 상속은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200%를 넘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이 판정에서 가업상속재산으로 보는 증여 주식은 특례를 적용받은 분뿐이라는 회신이 있어(사전-2023-법규재산-0865, 당시 조문 기준), 한도를 넘겨 증여한 주식은 판정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18의2①·②, 조특법 §30의6①·②, 상증령 §15⑥·⑦, 조특령 §27의6②, 사전-2023-법규재산-0865

6 사후관리 5년과 추징

상속은 5년 안에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상속인의 가업 미종사(대표이사등 미종사 포함), 지분 감소가 있으면 공제액의 100%와 이자상당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자산 처분은 처분비율을 곱함),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5년 평균이 모두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해도 같습니다. 증여는 5년 안에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지분 감소, 대표이사직 미유지, 주된 업종 변경이 있으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고용 요건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중 상속은 수용·조직변경 등이고, 증여는 수증자 사망(상속인 승계)·국가 증여 등이며 조직변경·사업확장 유상증자의 지분 감소는 별도 제외 사유입니다. 가업 경영 관련 조세포탈·회계부정(전 10년, 후 5년 이내)으로 징역형이나 일정 벌금형이 확정돼도 배제 또는 추징됩니다.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안입니다.

근거: 상증법 §18의2⑤·⑧·⑨, 상증령 §15⑧·⑪·⑲, 조특법 §30의6③·④·⑧, 조특령 §27의6④·⑥·⑦



04

판정 순서와 일정

요건 판정, 기한 확정, 신고 순서로 진행하고 사후관리 5년을 관리합니다

증여특례 실행 이후 기한

증여일
주식 증여. 이날이 사후관리 5년과 대표이사 취임 3년의 기산일입니다.

3개월 이내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와 특례 신청. 수증자의 가업 종사도 이때까지 갖춥니다.

3년 이내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합니다(조특령 §27의6①2호).

5년
사후관리 종료. 가업 종사, 대표이사직, 지분을 유지하고 업종을 바꾸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15년
허가일부터 최장 15년으로 사후관리 5년보다 깁니다. 담보와 분할 납부 일정도 사후관리 점검표에 같이 둡니다.

도해 3. 판정 순서

질문	답에 따른 판단
1. 가업 해당 요건을 갖췄을까요?	업종, 규모, 10년 경영, 40% 지분 10년 보유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공제와 특례가 모두 배제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후계자가 기한 안에 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증여는 신고기한까지 종사하고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합니다. 상속은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내 대표이사등입니다. 취임일을 확정한 뒤에 실행합니다.
3. 한도 안일까요? 사업무관자산이 있을까요?	한도는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입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대상 가액에서 빠지고, 빠진 부분은 상증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4.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일까요?	증여는 시점을 고르고 10%를 적용하지만 상속 때 가산되며 증여세 납부 부담이 먼저 생깁니다. 상속공제는 상속개시 시점이 정해져 있어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5. 사후관리 5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분 처분, 유상증자 실권, 업종 변경, 대표이사 교체 계획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은 가업 미종사 등이 생기면 연부연납 허가도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71④4호, 상증령 §68⑥·⑧).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법인 주식 평가액, 총자산과 사업무관자산 내역, 주주명부, 대표이사 재직 이력. 이 4가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부족해 보이는 요건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사업무관자산 판정은 자산 내역을 본 뒤 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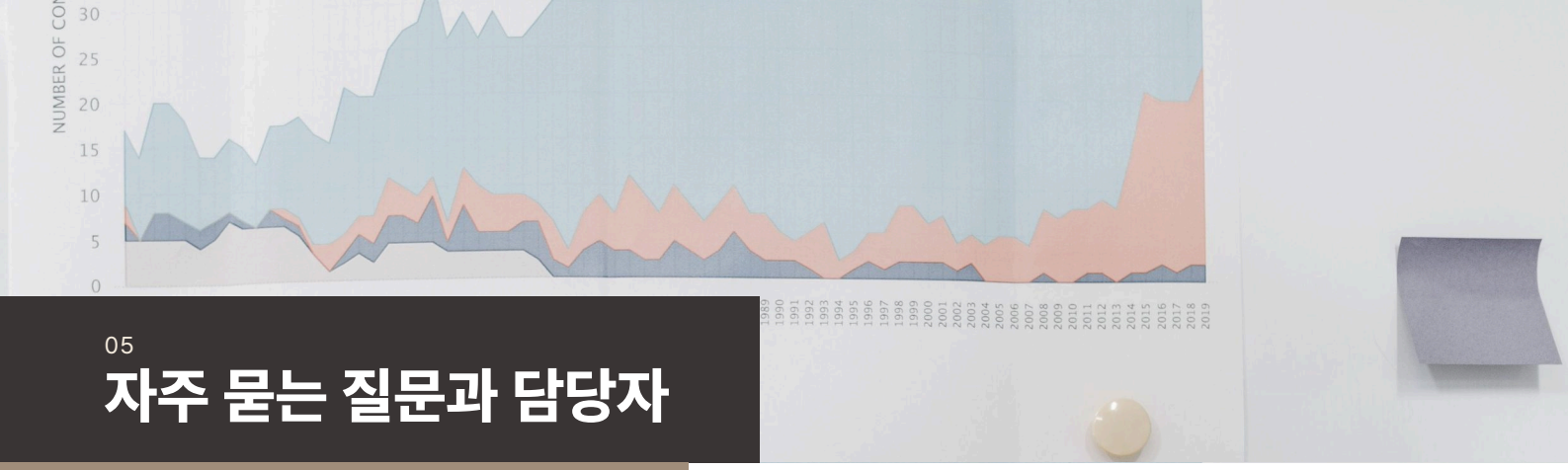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증여특례를 받으면 상속 때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액이 더 크면 차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고,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을 낮추지 않았으며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상증령 §15③1호나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30의6⑤·⑥, §30의5⑨·⑩, 조특령 §27의6⑨

Q2. 특례신청이나 취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상증법의 일반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수증자나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증여일부터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으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되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두 기한이 함께 적용되므로 취임일은 증여 전에 확정합니다. 취임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법 §30의6③, §30의5⑫, 조특령 §27의6①2호·③·⑤

Q3. 사업무관자산이 있으면 혜택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상 가액이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주식 100억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30%이면 가업자산상당액은 70억원이고 증여특례 세액은 (70억원 - 10억원) x 10% = 6억원입니다. 나머지 30억원은 특례 밖에서 과세됩니다. 현금과 금융상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보유 목적과 사용 계획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내역을 정리합니다. 심판원은 해지금액이 예적금 갱신이나 차입금 변제에 쓰인 사실을 근거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근거: 조특령 §27의6⑩, 상증령 §15⑤2호, 조심-2026-부-1671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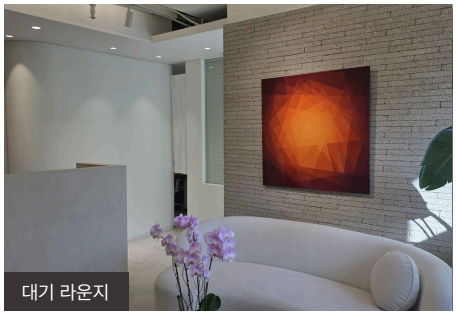

대기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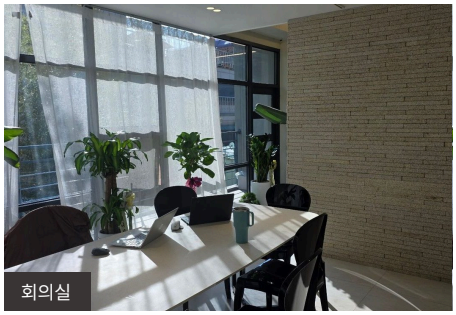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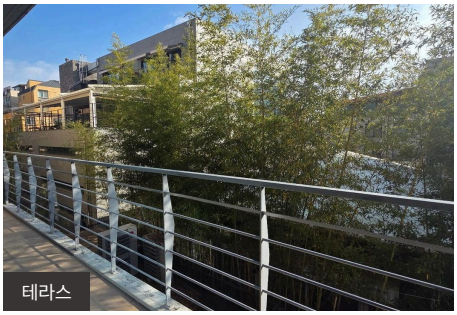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